

RI 2007 규정심의회 결의 보고서

수신: 로타리클럽

RI 규정심의회가 2007년 4월 22-27일,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RI 세칙 제 8.140.2. 항에 따라,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97개의 입법안 결의 보고서를 동봉합니다.

규정심의회는 167개의 제정안(RI 정관 개정을 위한 제안)과 170개의 결의안(RI 정관 개정이 목적이 아닌 제안) 등 총 337개의 입법안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59개의 제정안과 38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입법안들 가운데 14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RI 이사회에 다시 회부되었으며, 152개는 부결되었으며, 74개는 철회되었거나, 철회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채택된 97개의 입법안 가운데 84개는 수정없이, 그리고 11개는 수정한 후에 채택되었습니다. 수정한 후 채택된 입법안들은 번호 옆에 (*) 표시가 되어 있으며, 입법안의 최종적인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제목이 수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입법안은 심의회 제출을 위해 사용된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첨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에는 밑줄로, 그리고 삭제된 내용은 가운데 줄로 표시함으로써 현행 RI 세칙에 대한 변경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정심의회 결의 보고서를 검토하실 때, 제정안과 결의안들이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그대로 수록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입법안들은 현행 정관 문서 개정을 목적으로 기안된 것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들은 2007 절차 요람 제작 시 최종 정리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 말미에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의 각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세칙 제 8.140.3 항 규정에 따라, 채택된 어떤 제정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경우에 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작성하신 양식은 **2007년 8월 27일까지** 에반스톤에 소재한 RI 세계본부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본 양식을 사용해 어느 특정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클럽들의 투표수 가운데 최소한 10 퍼센트 이상일 경우, 이 안건에 대한 심의회 결정은 정지됩니다. 이 경우, RI 세칙 제 8.140.5., 8.140.6., 그리고 8.140.7. 항에 따라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RI 사무총장은 1개월 이내에 투표 용지를 준비하여 각 클럽으로 우송, 효력이 정지된 안건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규정심의회 결의 사항에 반대할 경우에만,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클럽이 2007 규정심의회 결의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동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d Futa

에드 후타
RI 사무총장

입법안 번호에 별표(*)가 표시된 입법안은 수정, 채택한 경우임.

결의 보고서 목차

<u>입법안 번호</u>	<u>제목</u>	<u>페이지</u>
07-11	일반 공휴일에 주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1 클럽 이사회에 부여할 것	1
07-14	회원은 로타리 연도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출석할 것.....1	1
07-16	출석 기록 조항 수정	1
07-17	출석 기록 조항의 개정	2
07-29*	4 대 봉사 부문을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에 수록	2
07-30	클럽 명칭과 소재지 변경 시 지구총재와 상의	3
07-37*	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 회원을 조사하지 않은 3 클럽의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	3
07-39	클럽은 로타리재단 동창을 주회에서 게스트로 환영할 것	4
07-41	방문 로타리안의 규정을 개정	4
07-42	로타랙터 출신 신입회원에게는 입회비를 면제할 것	4
07-44	차기 회장과 차차기 회장의 임기를 분명히 규정	5
07-46*	차기회장이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5 현 회장이 회장 임무를 계속하도록 할 것	5
07-57	로타리재단 동창에게 정회원 자격 부여	6
07-65	회원 자격 종결 조항의 수정	6
07-68	소아마비 박멸을 국제로타리 최우선 사업 목표로 재천명할 것	7
07-70	안전한 식수 문제에 역점을 두고, 관련단체인 7 Blue Planet Run Foundation 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	7
07-96	신세대 교환을 영 어덜트 교환으로 변경	8
07-98	모의 유엔 총회(Model United Nations Assembly: MUNA)를 8 RI 지침 프로그램으로 채택	8

입법안 번호에 별표(*)가 표시된 입법안은 수정, 채택한 경우임.

07-107	로타리 휘장 및 초아의 봉사에 관한 내용을 RI 정관에 포함	8
07-109	로타리 제 2 표어 수정	9
07-113	새로운 로타리 축하 작곡을 위해 전세계적인 콘테스트를 개최할 것	9
07-116	로타리재단 미래 비전 계획의 사명과 모토 그리고 우선 과제의 결정	10
07-118	지구지정기금의 30%까지를 지구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11
07-120	상응보조금 최소 신청 금액을 미화 2,500 달러로 조정	11
07-121	상응보조금을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11
07-124	보조금과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감사 비용 및 절차를 관리위원회가 검토해 주도록 요청	12
07-130	RI 웹사이트의 “연구단교환” 섹션에	13
	연구단교환 파트너 요청란을 설치할 것	
07-132	장학금 신청서 처리 기간 단축	13
07-134	로타리 웹 사이트에 보다 많은 프로젝트 정보를 게재할 것	14
07-137	재단 연차 보고서에 기금 개발비를 항목별로 구체화시켜 줄 것	14
07-143	로타리 강령 첫째 항 스페인어 번역 수정	15
07-158*	지구 재정 연차 보고에 대한 규정 개정	15
07-160	차기회장연수회에서 지구 분담금 승인을 허용	16
07-164	RI 위원회 지명 절차 개정	17
07-165	RI 재무와 이사 1 인을 RI 재정 위원으로 임명	17
07-166	규정심의회 연도에는, RI 정관 및 세척 위원회 직전 위원을 현 위원으로 추가할 것	18
07-167	회계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 감사 및 운영 심의 위원회의 권한을 수정할 것	18
07-169	빈곤퇴치 위원회 구성	19
07-175	각 지구가 하나의 존에 소속되도록 재조정	20

07-177	존 5 를 3 개 지역으로 재편성	20
07-180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로타리클럽과 커뮤니케이션	20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07-183	로타리안들에게 RI 웹 사이트를 통해	21
	자신의 회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07-184	RI 웹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요청	22
07-185*	RI, 클럽, 그리고 지구는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22
	RI 웹 사이트 링크를 포함시킬 것	
07-186	로타리 웹 사이트에 e-클럽 링크를 포함시켜 줄 것	22
07-187	클럽들에게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제공할 것	23
07-203	RI 정관 및 세칙, 로타리 정책 규약 등의 모호한	23
	조항들을 보다 분명히 해 줄 것	
07-204	출판물 관리를 위한 십진법 채택 요청	24
07-205	로타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명칭을 RI 주요 언어로 표기	24
07-210	RI 회장 대리는 방문 지역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선정할 것	25
07-213	힌두어를 RI 공식 언어에 포함시킬 것	25
07-219	러시아어를 RI 공식 언어에 포함시킬 것	25
07-222	6 월 14/16 일 이전에 연차 국제대회를 개최	25
07-223	국제대회 프로그램 변경	26
07-224	국제대회 스폰서 지구 로타리안들의 대회 등록비를 할인해 줄 것	26
07-225	존 연수회를 로타리 연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RI 세칙에 포함	27
07-228	RI 회장 피지명자의 선출 규정 수정	27
07-230*	RI 회장 피지명자의 선출 규정 수정	31
07-231	RI 회장 지명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늘릴 것	32

07-235*	이사 지명위원회 위원의 자격 개정	33
07-239	지구총재 피지명자의 자격 개정	33
07-240	지구총재 피지명자 선출 일자 변경	34
07-241	지구총재 지명 조항 개정	34
07-250*	총재 특별 선거에 관한 조항 개정	37
07-251	우편 투표 조항의 개정	38
07-252	우편 투표 서식의 개정	39
07-256	지구총재 임무 중 로타리 단체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추가	39
07-260	임원 지명에 대한 규정을 바꿀 것	40
07-261	RI 부회장을 임기 2년차 이사들 가운데서 선정할 것	41
07-268	선거 이의 제기 절차 개정	41
07-283	회원 1인당 회비 증액	42
07-287	RI 회원 1인당 연회비의 1/12를	43
	신입회원 비례 할당 월(月) 회비로 납입	
07-290*	일반 잉여금의 보유 수준 조항 개정	43
07-291	RI 회비 및 지구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44
	클럽들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	
07-292	용도 제한이 없는 RI 순자산에 대한 RIBI 기부금 증액	45
07-293	5개년 재정 계획 존 연수회 발표자	45
07-295	경비 절감을 위한 팀 구성	46
07-301	규정심의회 대의원 선출 조항 개정	46
07-304	규정심의회 입법안 상정 일정을 개정	49
07-308	지구당 입법안을 5개까지로 제한	51

07-310	결함있는 입법안과 하자있는 입법안의 차이를 51 없애고, 관련 조항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할 것	51
07-311	하자있는 입법안의 범주에 관리상의 조치를 54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결의안을 포함시킬 것	54
07-316	규정심의회에서 채택한 제정안은 54 절차요람 개정 시 원문대로 포함시킬 것	54
07-317	차기 규정심의회 채택이 있을 때까지 55 현행 규정심의회 절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	55
07-318	지구대회 투표 절차를 개정 55	55
07-329*	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것 56	56
07-330	직업분류가 총원된 경우에도 재단동창을 57 정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할 것	57
07-331*	회원 자격 종결과 관련된 직업분류 조항의 수정 58	58
07-334	결석으로 인한 회원 자격 종결 규정을 개정할 것 58	58
07-335	회원자격 종결 절차 중에 클럽이 회원자격을 임시로 59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것	59
07-340*	RI 이사회 결정 사항을 출판할 것 59	59
07-342	RI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개정할 것 60	60
07-343	로타리안들의 분쟁 해결 규정을 마련할 것 61	61
07-344	예비 로타리안들에 대한 통계를 전략 계획안에 포함시킬 것 62	62
07-348	국제로타리 여행 방침을 변경할 것 62	62
07-350*	모든 RI 회장 후보자들에게 인터뷰 기회를 부여할 것 63	63
07-357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후속 조치를 알릴 것 63	63

채택된 제정안 07-11

일반 공휴일에 주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클럽 이사회에 부여할 것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4 페이지)

제 5 조 회합

제 1 항 주회

(다) 취소. 만일 주회 날짜가 일반 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클럽 회원이 사망했거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럽 회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이사회는, 재량에 의해,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 로타리 연도 중에 4 회까지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주회를 3 회 이상 연속 개최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4

회원은 로타리 연도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출석할 것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8 페이지)

제 11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4 항 자격 종결 — 결석

(가) 출석을.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1) 로타리 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6050 퍼센트 이상 출석하거나 출석보전을 하여야 하며,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6

출석 기록 조항 수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5-236 페이지)

제 8 조 출석

제 3 항 출석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가)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여건에 따른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회원 연령과 1 개 또는 그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 년 이상이며, 회원이 출석 면제 희망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제 4 항 RI 임원의 결석. RI 의 현직 임원의 결석은 용납된다.

제 5 항 출석기록. 본 조 3(나)항 및 4 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은 클럽의 출석률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결석 또는 출석은 그러한 계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7

출석 기록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6 페이지)

제 8 조 출석

제 5 항 출석기록. 본 조 3 항 및 4 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은 클럽의 출석률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결석 또는 출석은 그러한 계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9*

4 대 봉사 부문을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에 수록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4 페이지)

제 5 조 4대 봉사

로타리의 4 대 봉사는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1. 클럽봉사, 첫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원이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직업봉사, 두 번째 봉사 부문으로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모든 직업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회원의 역할은 개인생활이나 직업에서 로타리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3. 사회봉사, 세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칭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구한다.

4. 국제봉사, 네 번째 봉사 부문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럽 활동과 프로젝트를 추구하며, 연락과 협조를 통해 문화, 관습, 성취, 영원, 문제 등에

익숙해짐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사귀기를 이루고, 국제 이해와 선의,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0

클럽 명칭과 소재지 변경 시 지구총재와 상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41 페이지)

제 18 조 개정

제 2 항 제 2 조 및 제 3 조의 개정. 본 정관 제 2 조 (명칭) 및 제 3 조 (클럽 소재지)는, 본 클럽의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모든 투표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이것을 토의할 주회 개최 10 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구총재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RI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7*

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 회원을 조사하지 않은 클럽의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78-179 페이지)

제 3 조 RI 회원 자격 종결 및 탈퇴

3.030. 이사회의 클럽 징계 또는 자격 종결 권한

3.030.1.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 종결

이사회는 회비나 기타 RI 에 대한 재정적 의무 또는 지구 기금으로 승인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클럽의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3.030.2. 기능 상실에 따른 자격 종결

이사회는 클럽이 어떤 이유로 해산되거나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지 않거나 또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클럽의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기능 상실로 클럽의 회원 자격을 종결시키기 전에, 이사회는 지구총재에게 자격 종결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030.3. 청소년 보호 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종결

이사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거나 이를 조사하지 않은 클럽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39

클럽은 로타리재단 동창을 주회에서 게스트로 환영할 것

로타리 정책 규약 7.040 항에 다음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7.040. 방문자와 게스트

7.040.4 로타리재단 동창 게스트

(가) 클럽은 로타리재단 동창, 특히 최근에 클럽 소재지로 이주한 재단 동창을 주회에서 환영하도록 권장된다. 재단 동창은 방문 로타리안과 동일한 비용을 납부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41

방문 로타리안의 규정을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0 페이지)

제 4 조 클럽 회원

4.100. 타 클럽 출석

모든 클럽 회원들은 다른 클럽의 주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전을 갖는다.

단, 타당한 사유로 클럽이 회원 자격을 종결한 전 회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42

로타랙터 출신 신입회원에게는 입회비를 면제할 것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7 페이지)

제 10 조 입회비 및 회비

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 세칙에 규정된 일정 금액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정관 제 6 조 4 항에 따라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영입된 이적 회원 또는 타 클럽의 전 회원은 또 다시 입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로타랙트 클럽 회원자격이 종료된 지 2년 안에 로타리클럽에 가입하는 신입회원에게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44

차기 회장과 차차기 회장의 임기를 분명히 규정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7 페이지)

제 9 조 이사 및 임원

제 5 항 임원의 선출

(나) 회장의 임기. 회장은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장 취임 전 18개월에서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선출되어야 하며, 선출되면 차차기 회장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차차기회장은 ~~후임자가 선출되면~~ 회장으로 취임하는 전년도 7월 1일부로 차기회장이 된다. 회장은 재임 예정 로타리 연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선출된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46*

차기회장이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현 회장이 회장 임무를 계속하도록 할 것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7 페이지)

제 9 조 이사 및 임원

제 5 항 임원의 선출

(다) 자격. 각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의 모범적인 정회원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은 차기 지구총재로부터 면제받지 않는 한,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협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 면제가 허락되면 차기회장은 클럽이 지명한 대리인을 대신 출석시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차기회장이 차기총재로부터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협의회 출석을 면제받지 않고 불참하거나, 면제 받았음에도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현 회장은 그 후임자가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 협의회에 완전히 참석하거나

정식으로 선출된 차기총재에 의해 교육을 받아 회장의 자격을 갖춘 후 회장 직을 승계할 때까지 회장 임무를 계속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57

로타리재단 동창에게 정회원 자격 부여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71-172 페이지)

제 5 조 회원

제 2 항 - 클럽의 구성:

(가) 클럽은 선량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사업 및 전문직업 분야에서 평판이 좋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 1)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유익한 사업 및 전문직업의 소유자, 공동 경영자(partner), 법인체 임원 또는 관리자이거나,
- 2)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유익한 사업 및 전문직업 또는 그 지점 내지 대리점의 관리자로서 업무 집행상의 재량권을 가진 중요한 지위를 가진 자, 또는
- 3)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직장 또는 주거지를 가졌다가, 위의 1) 또는 2)에 명시된 지위에서 은퇴한 자. 또는
- 4) 이사회가 로타리재단 동창이라 규정한 지위를 가진 자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65

회원 자격 종결 조항의 수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8-239 페이지)

제 11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5 항 자격 종결 — 기타 원인

(가) 정당한 이유.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사회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6 조 1 항과 네 가지 표준에 의거하여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68

소아마비 박멸을 국제로타리 최우선 사업 목표로 재천명할 것

국제로타리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제, 국가 그리고 지역 단체 및 기관들과 합심하여 전세계 소아마비를 박멸하는 것이므로,

2007 국제로타리 규정심의회에서 다음을 결의하는 바이다.

- 국제로타리의 최우선 사업은 전세계 소아마비 박멸이다.
- 소아마비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는 어떠한 사업도 채택하지 않는다.
- 2004 규정심의회 결의안 04-525 에 따라, 차후 규정심의회 결의가 있을 때까지 여타의 프로그램도 채택하지 않는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70

안전한 식수 문제에 역점을 두고, 관련단체인
Blue Planet Run Foundation 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

인류의 3분의 1 이 고통받고 있는 안전한 식수 부족의 문제는 기술적인 장애로 그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집단적 노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누구나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달성가능하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게 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도주의 활동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식수 부족으로 인한 위기는 로타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수자원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Blue Planet Run Foundation(BPRF)는 RI 와 공통된 문화, 목표, 그리고 활동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BPRF 는 식수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수자원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과, 전세계적으로 조화된 장기적인 집단적 노력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적인 달리기 이벤트인 Blue Planet Run 을 추진 중에 있다.

로타리안이 Blue Planet Run 을 지원한다면 RI 는 로타리와 봉사의 이상을 널리 알리고 회원증강과 확대 참여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BPRF 는 RI 수자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원이 될 것이다.

로타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BPRF 를 지지하여 각 클럽과 지구가 BPRF 달리기 이벤트를 포함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도록 RI 이사회에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96

신세대 교환을 영 어덜트 교환으로 변경

2004 절차요람(89 페이지)에 의하면 청소년을 대상을 한 로타리의 모든 프로그램을 신세대 프로그램으로 총칭하며, 인터랙트, 로타랙트, 라일라, 청소년 교환 등이 이에 포함된다.

2004 절차요람 94 페이지에 언급된 청소년 교환에는 18 세에서 25 세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세대 교환이 포함된다.

사람들이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신세대 교환을 청소년 프로그램의 총칭인 신세대 프로그램과 혼동하는 것을 막고, 신세대 교환의 성격을 보다 선명히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행 신세대 교환 프로그램을 영 어덜트 교환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98

모의 유엔 총회(Model United Nations Assembly: MUNA)를
RI 지침 프로그램으로 채택

2004년 규정심의회 결의안 04-111을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유엔 모의총회(MUNA)를 RI 지침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07

로타리 휘장 및 초아의 봉사에 관한 내용을 RI 정관에 포함

로타리 휘장과 모토(‘초아의 봉사’)에 대한 조항이 RI 정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 규정심의회에 이와 관련된 입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09

로타리 제 2 표어 수정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H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와 “초아의 봉사(Service Above Self)”는 로타리 초창기 시절부터 사용해온 로타리의 표어이다. 특히, 전자는 1911 년에 채택되어 90 년 동안 사용해 왔다.

2004 규정심의회는 표어의 영문 표기 가운데 “He”가 단지 남성 대명사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They”로 변경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표어는, 직업봉사는 개인 스스로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거의 1 세기 동안 사용해왔던 원래의 표현대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They Profit Most Who Serves Best)”의 영문 표기 가운데 “They”를 “He/She”로 다시 변경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13

새로운 로타리 축가 작곡을 위해 전세계적인 콘테스트를 개최할 것

현재 로타리 축가는 베토벤의 에그문트 서곡에서 발췌한 “행진곡”을 사용하고 있으나, (로타리 정책 규약 26.070)

새로운 로타리 축가를 위한 세계적인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것은 로타리를 널리 알리고, 로타리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며, 로타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새로운 축가는 무엇보다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로타리의 주요 목적을 강조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가는 이에 적합하지 않으며, 로타리안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로타리안들이 축가에 관해 모르고 있다.

현재 곡조는 평화와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주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반복적이므로,

세계의 공통어인 음악을 통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새로운 로타리 촉가를 작곡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16

로타리재단 미래 비전 계획의 사명과 모토 그리고 우선 과제의 결정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은 미래 비전 계획을 세웠으며

국제로타리 이사회는 미래 비전 계획의 주요 내용인 로타리 재단 사명과 모토 그리고 우선 과제 등을 승인하였다.

이에 국제로타리 이사회와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는 미래 비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규정심의회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7 규정심의회가 이를 채택한다면,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미래 비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로타리재단 사명 선언: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사명은 보건 증진, 교육 지원 그리고 빈곤 퇴치를 통해 세계 이해와 평화 증진을 이룩하려는 로타리안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모토: 인류애의 실천

우선 과제:

미래 비전 계획에 따라 재단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조정

클럽 및 지구 레벨의 참여 증대와 소속감 고취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

미래 비전 계획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모든 프로그램 및 그 운영의 간소화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18

지구지정기금의 30%까지를 지구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 로타리재단 연차 프로그램에 기부할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로타리안들에게 재단 기부를 증가시킨데 대한 보상을 즉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 재단에 기부한 모든 지구에게 지구지정기금의 30%까지를 지구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20

상응보조금 최소 신청 금액을 미화 2,500 달러로 조정

상응보조금 신청 액수가 최소한 미화 5,000 달러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상응보조금 신청 수가 줄었다.

따라서, 상응보조금 최소 신청 액수를 미화 2,500 달러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21

상응보조금을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교육 자재와 물품을 제공하기에 앞서 학교를 먼저 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해당 목적에 부합할 경우, 로타리재단 상응보조금을 건물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24

보조금과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감사 비용 및 절차를 관리위원회가 검토해 주도록 요청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왔다.

- 로타리재단 친선사절 장학금
- 로타리 국제 연구 센터
- 로타리 대학 교수 보조금
- 연구단교환
- 지구보조금
- 개인보조금
- 상응보조금
- 보건, 기아추방 및 인간존중(3H) 보조금
- 블레인 지역사회 보조금
- 폴리오플러스
- 폴리오플러스 파트너

1983년 로타리재단 법인화 문서(2004년 절차요람에 수록된 로타리재단 세칙 8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에는 로타리재단의 목적과, 수입 및 자산의 헌납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관리위원회는 로타리안과 다른 기부자들의 기금이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반영한 자발적인 기부임을 인식하며, 기부자들이 자신들의 기부가 로타리재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합당한 목적에 쓰일 것이라는 믿음과 이해를 갖고 있음도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관리위원회는 재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적절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로타리안과 개별 클럽의 정직과 성실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정도를 벗어난 모든 불미한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보조금의 수령자, 보조금 스폰서, 기타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기대된다:

- 1) 로타리재단 기금은 손실이나 유용됨 없이,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 2) 재단기금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태 예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 3) 책임과 기한일을 분명히 하여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 4) 기금과 관련된 모든 재정 기록은 최소한 기업의 표준 관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업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로타리안 선언문 및 네 가지 표준과 일치되도록 한다.
- 5) 기금과 관련하여 불미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로타리재단에 보고한다.
- 6) 관리위원회가 보조금을 승인한대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당초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로타리재단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로타리재단의 현행 방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적인 재정 감사 및 평가를 받는다.
- 8) 정해진 기한 내에 프로그램 및 재정 활동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9) 프로젝트 실시와 관련하여 통보된 모든 질문에 설명할 자료와 준비를 갖춘다. (TRFC 7.030.)

관리위원회는 각 보조금과 프로젝트의 심의/감사 시에 지출된 비용이 보조금 실제 총액에 비추어 합당한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심의/감사가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접 존에 소속된 로타리클럽의 로타리안에 의해 시행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30

RI 웹사이트의 “연구단교환” 섹션에 연구단교환 파트너 요청란을 설치할 것

연구단교환 위원장은 로타리연도 시작을 3 개월 앞둔 상태에서, 최고 18 개월에 앞서, 차기 로타리연도 활동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

차기총재가 국제협의회에서 적절한 파트너 지구의 총재를 만나 합의에 도달하기란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며, 따라서 연구단교환 위원장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파트너 지구를 물색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로타리 웹 사이트의 “연구단교환” 섹션에 연구단교환 파트너 요청란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란은 연구단교환 지구위원장들이 검색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32

장학금 신청서 처리 기간 단축

친선사절 장학금: 로타리안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서(012)에 따르면, 관심 있는 신청자들은 유학 희망 연도의 1 년 전 3-7 월 사이에(14-17 개월 전) 현지 로타리클럽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3 학년부터 장학금 신청을 시작하지만, 선발 위원회는 학업 시작 8 개월 전인 4 학년 12 월에나 회합을 갖게 되므로 신청자는 학업 시작 10 개월 전인 유학 희망 연도 1 년 전 10 월에나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재단의 일정이 미국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일정과 맞지 않는다.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3 학년, 4 학년 성적과 미국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학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 대학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학 1년 전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로타리의 장학생 선발 일정은 학기 일정과 맞지 않아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는다.

프랑스-미국 풀브라이트 위원회는 매년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유학 희망 연도 전 해의 12월 1일로 결정함으로써 대학 일정과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장학금 신청서 일정을 14-17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할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34

로타리 웹 사이트에 보다 많은 프로젝트 정보를 게재할 것

국제로타리와 로타리재단은 기아, 질병, 고통을 완화하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읽고 씬하는 능력을 가르치고자 하는 로타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관한 클럽 및 지구 차원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인터넷에 로타리 재단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게재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승인 받았거나 현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데이터, 장학금 및 전세계에서 계획되고 있는 기타 주요 활동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클럽 및 지구가 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보다 손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37

재단 연차 보고서에 기금 개발비를 항목별로 구체화시켜 줄 것

로타리재단은 그 운영과 기금 사용에 있어 기부자들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로타리재단의 효율성이나 감소한 지출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로타리재단의 연차 보고서에 나타나는 기금 개발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재단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43

로타리 강령 첫째 항 스페인어 번역 수정

로타리 강령, 첫째 항 스페인어 번역은 영어 원문, “The development of acquaintance as an opportunity for service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에 충실하지 않으며,

영어 사전을 보면, “acquaintance”를 “friendly relationship with a person who is known, through work or business, but who is not a close friend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친분, 그러나 가까운 친구는 아님)”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언어 번역을 보면 “friendship (우정, 우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페인어 번역에 “friendship (우정, 우애)”라는 단어 삽입은 스페인어 통역이나 회원들간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로타리 강령 첫째 항 스페인어 번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

*Primero. ~~El conocimiento mutuo y la amistad como ocasión de servir~~El desarrollo de relaciones personales amistosas como una oportunidad de servicio.
[First. ~~Mutual acquaintance and friendship as an opportunity to serve~~The development of friendly personal relationships as an opportunity for service.]*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58*

지구 재정 연차 보고에 대한 규정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9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60. 지구 재정

15.060.4. 지구 재정의 연차 보고

총재는 임기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회계사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토를 받은 지구 재정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모든 클럽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구대회 결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회계사 혹은 지구 감사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구 감사 위원회가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 지구 감사 위원회는 최소한 3 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나) 모든 위원은 로타리 정회원이어야 한다;

- (다) 최소한 한 명의 전직 총재, 혹은 감사에 경험을 갖춘 위원이 있어야 한다;
- (라) 해당연도에 다음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감사 위원이 될 수 없다:
 - 지구총재, 재무, 은행 계좌 서명인, 재정위원회 위원;
- (마) 위원은 지구가 확립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 연차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가) 지구재정의 자원(RI, 로타리재단, 지구, 클럽 등)
- (나) 모금 활동을 통해 지구 이름으로 수령한 모든 기금
- (다) 로타리재단 보조금이나, 지구를 위한 용도로 지정된 로타리재단 기금
- (라) 지구위원회의 모든 회계 내역
- (마) 지구총재, 혹은 지구 이름으로 처리된 모든 회계 내역
- (바) 지구 기금의 모든 지출
- (아) RI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기금

연차 보고서는, 다음 지구 회합에서 지구 재정에 관한 보고서 채택이 있을 것이라고 30 일 동안 공고하여 모든 지구 클럽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지구 회합에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한 회합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차기 지구대회에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60

차기회장연수회에서 지구 분담금 승인을 허용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9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60. 지구 재정

15.060.2. 분담금 승인

지구 기금은 클럽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인당 지구 회비에 의한 지구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회비 액수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 (가) 지구협의회에서 출석한 차기 클럽회장 4분의 3의 승인으로 결정. 단, 표준 클럽 정관, 제 9 조 5(다)항에 따라, 차기총재가 차기 클럽회장의 지구협의회 참석을 면제해 준 경우에는 해당 차기 클럽회장이 지명한 대리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지구의 재량으로 결정.
- (나) 지구대회에서 선거인단의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결정.
- (다) 차기회장연수회에서 출석한 차기 클럽 회장 4분의 3의 승인으로 결정, 단, 표준 클럽 정관, 제 9 조 5(다)항에 따라, 차기총재가 차기 클럽회장의 지구협의회 참석을 면제해 준 경우에는 해당 차기 클럽회장이 지명한 대리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지구의 재량으로 결정.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64

RI 위원회 지명 절차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2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020. 위원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장은 이사회와 상의하여 각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임명하여야 한다. 회장은 모든 RI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65

RI 재무와 이사 1 인을 RI 재정 위원으로 임명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2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010. 위원 수와 임기

이사회는 통신, 정관 및 세칙, 국제대회, 지구 편성(분구), 선거 심사, 재정, 그리고 로타랙트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RI 에 크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와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통신 위원 6 명, 이 중 2 명은 3 년 임기로 매년 임명; (2) 정관 및 세칙 위원 3 명, 이 중 1 명은 3 년 임기로 매년 임명; (3) 국제대회 위원 6 명, 이 중 1 명은 연차 국제대회 주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4) 분구 위원 3 명, 이 중 1 명은 3 년 임기로 매년 이사회가 임명; (5) 선거 심사 위원 6 명, 각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매년 2 명의 위원 임명; (6) 재정 위원 68 명, 각 위원 6 명의 임기는 3 년이며, 매년 2 명의 위원 임명, RI 재무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 1 명은 임기 1 년이며 투표권이 없는 위원으로서 임기는 1 년; (7) 로타랙트 위원 6 명, 각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매년 2 명의 위원을 임명하되 최소한 3 명 이상의 로타랙터를 위원으로 추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각 위원회 위원 수와 임기는 아래 제 16.050 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정하되, 매년 위원회 위원들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66

규정심의회 연도에는, RI 정관 및 세척 위원회 직전 위원을
현 위원으로 추가할 것

국제로타리 세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2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010. 위원 수와 임기

이사회는 통신, 정관 및 세척, 국제대회, 지구 편성(분구), 선거 심사, 재정, 그리고 로타랙트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RI에 크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와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통신 위원 6명, 이 중 2명은 3년 임기로 매년 임명; (2) 정관 및 세척 위원 3명, 이 중 1명은 3년 임기로 매년 임명; 단, 규정심의회 연도에는 직전 위원 1인을 4년 임기로 추가, 전체 위원 수를 4명으로 한다; (3) 국제대회 위원 6명, 이 중 1명은 연차 국제대회 주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4) 분구 위원 3명, 이 중 1명은 3년 임기로 매년 이사회가 임명; (5) 선거 심사 위원 6명,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2명의 위원 임명; (6) 재정 위원 6명,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2명의 위원 임명; (7) 로타랙트 위원 6명,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2명의 위원을 임명하되 최소한 3명 이상의 로타랙터를 위원으로 추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각 위원회 위원 수와 임기는 아래 제 16.050 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정하되, 매년 위원회 위원들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67

회계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 감사 및 운영 심의 위원회의 권한을 수정할 것

국제로타리 세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2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040. 특별위원회

본 세척 제 16.010.항에서 제 16.030.항까지의 조항은 제 16.100.항과 ~~17.075~~16.120.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나 지명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110. 회계 감사 위원회

이사회는 회계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재정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매년 현 이사 중에서 3명을 임명하여

위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이사 출신이 아닌 3 명의 위원들은 6 년 임기로 선출되는데, 2 년 마다 1 명씩을 선출한다. 회계 감사 위원회는 RI 재정 보고서, 외부 회계 감사, 내부 출납 관리 제도의 통제, 내부 감사 및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재정 문제들을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 3 회까지 회합을 갖는다.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추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회 연락 이사로 봉사한다. 이 위원회는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국제로타리 세척 제 16.110.항에 대한 잠정 조항

2007 년 7 월 1 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가 아닌 위원 3 명이 임명된다. 1 명은 2 년 임기로 2009 년 6 월 30 일자로 그 임기가 끝난다. 그리고 1 명은 4 년 임기로 2011 년 6 월 30 일자로 그리고 다른 1 명은 6 년 임기로 2013 년 6 월 30 일자로 그 임기가 끝난다.

17.07516.120. 회계 감사 및 운영 심의위원회.

이사회는 회계 감사 및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단임으로 6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6 명의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 매 2 년마다 2 명의 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전 회장이나 현 이사 또는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들은 경영, 리더십 개발 또는 재정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로타리안들로 균형있게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 3 회까지의 회합을 갖는다.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추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 회계 감사 및 운영 심의위원회는 RI 재정 보고서, 외부 회계 감사, 내부 출납 관리 제도의 통제, 내부 감사, 운영 절차의 효율성, 관리 절차 및 시행 기준 그리고 기타 관련된 재정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등 모든 재정 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며,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회계감사 및 운영 심의위원회는 이사회의 전체 회의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69

빈곤퇴치 위원회 구성

빈곤은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고통 중의 하나로서, 현재 100 년 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인류가 전체의 50%에 달하며; 28 억 인구가 하루에 2 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지금도 8,000 명의 아동들이 영양 실조로 인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 빈곤을 퇴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세계 모든 로타리안들이 목표 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75

각 지구가 하나의 존에 소속되도록 재조정

그동안 일부 지구들은 두 존에 소속되어 시간과 경비의 소요가 많았다.

따라서 각 지구는 하나의 존에 소속되도록 지구 경계를 재조정해줄 것을 RI 이사회에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77

존 5 를 3 개 지역으로 재편성

RI 세칙 제 12.010.6 항에 의거, 존 5 의 구역을 현재 2 구역에서 3 구역으로 재편성해 줄 것과 제 3120 지구, 3240 지구, 3250 지구, 3260 지구, 3290 지구 등이 위치하고 있는 인도 동부 및 북동부를 1 개 구역으로 묶어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80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로타리클럽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로타리클럽과 회원은, 이사회 결의 사항을 비롯하여,

상임 위원회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안건 및 그 결과와,

매년 RI 관리 항목으로 기부하는 미화 48 달러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으며,

이사회와 국제로타리는 이와 같은 정보를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 사항, 이사회 위원회 활동, RI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전달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바,

RI 는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로타리안들이 각자의 의견은 제시하고, 로타리의 발전을 위한 내부 토론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제대회나 지역/존 대회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국제로타리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에서는 1 개의 공식 잡지와 여러 언어로 제작되는 공식 지역 잡지를 통해 이와 같은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나,

각 지역잡지마다 취재 성향과 기사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공식잡지와 지역잡지 모두 대부분의 로타리안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이나,

인쇄판 잡지는 전자 미디어로는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로타리안들에게는 계속해서 보급되어야 하나, 잡지 구독이 모든 로타리안들의 의무가 되어야 하는 지는 의문이므로,

이사회는 정보의 필요성, 내부 토론, 아이디어 교환 등에 관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차기 규정심의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83

로타리안들에게 RI 웹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회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RI 웹 사이트에는 ‘로타리 온라인 업무(Member Access)’가 있으며,

모든 회원들은 R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로타리안에게 RI 웹 사이트, 로타리 온라인 업무(Member Access)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84

RI 웹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요청

RI 웹사이트에서는 여러 문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RI 가 제작한 문서에는 출판일/개정일/코드 등이 명시된다. (예: 141-KO (1205))

RI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문서에 출판일/개정일/코드 등이 포함된 링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185*

RI, 클럽, 그리고 지구는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RI 웹 사이트 링크를 포함시킬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0 페이지)

제 21 조 로타리 월드와이드 웹

이사회는 월드 와이드 웹에 RI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이 웹사이트는 로타리 월드 와이드 웹으로 부르며, 이사회가 승인한 여러 개의 언어로 개설되어야 한다. 기본 웹사이트는 영어로 개설되며, 로타리 월드 와이드 웹으로 부른다. 이 웹의 목적은 이사회가 RI 목적과 로타리 강령을 증진하는 것을 돕는 데 있다. 웹 사이트를 갖고 있는 로타리클럽과 지구는 자신들의 웹 사이트에 이사회가 승인한 언어로 개설된 로타리 월드 와이드 웹으로의 링크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86

로타리 웹 사이트에 e-클럽 링크를 포함시켜 줄 것

로타리 e-클럽은 로타리안들에게 출석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며,
또한 독특한 교육 포럼을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RI 웹 사이트에서 로타리 e-클럽에 접속할 수 있도록 e-클럽 링크를 홈 페이지에서 포함시켜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187

클럽들에게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제공할 것

웹에서의 e-미팅은 로타리에게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다.

회원증강은 물론 로타리의 성장을 위해, 로타리는 기존 젊은 층의 로타리안을 포함하여 전자 통신 장비에 익숙한 젊은 예상 회원들에게 흥미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 프로젝트에 참가한 로타리클럽들은 웹을 통해서도 로타리 봉사 활동과 회원 친목 활동이 가능하며, 또한 e-미팅으로도 로타리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으며 클럽을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시험 프로젝트는 단일 클럽이 인터넷 회합 플랫폼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플랫폼은 클럽마다 1 주일에 단지 2 시간만 필요하므로 동일 지구나 다른 지구에 소속된 여러 로타리클럽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일주일 내내 공동 사용할 수가 있다.

e-미팅은 로타리클럽 주회는 물론 지구, 존 그리고 RI 회합에 참석하기 위한 로타리안들의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RI 경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로타리클럽을 포함한 전체 로타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구입,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03

RI 정관 및 세칙, 로타리 정책 규약 등의 모호한 조항들을 보다 분명히 해 줄 것

RI 정관 및 세칙, 로타리 정책 규약에는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한 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조항의 해석은 종종 전통적인 관례에 따른다.

따라서 RI 정관이나 세칙, 혹은 로타리 정책 규약의 모호한 단어들을 삭제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단어들을 해석하기 위해 규범이 되는 단어 리스트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04

출판물 관리를 위한 십진법 채택 요청

RI 와 로타리재단에서 발송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정보를 요청하는 로타리안의 수가 많기 때문에 클럽 및 지구에서 로타리 프로그램 내용을 보관하거나 찾아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바,

모든 클럽, 지구, RI, 로타리재단 그리고 로타리안들이 찾아볼 수 있는 통합 도서관과 자료실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국제로타리와 로타리재단의 출판물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십진법을 채택함으로써 중요한 자료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출판물들이 이 시스템에 따라 분류하여 클럽 및 지구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05

로타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명칭을 RI 주요 언어로 표기

많은 로타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명칭이 아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나 영어 약자로 표기되고 있다. 예: RYLA (Rotary Youth Leadership Awards; 라일라), PETS (President-elect Training Seminars; 차기회장 연수회), 3-H (Health, Hunger, Humanity; 보건, 기아추방, 인간존중), YEP (Youth Exchange Program; 청소년교환 프로그램), YEO (Youth Exchange Officer; 청소년교환 임원), GETS (Governor-elect Training Seminars; 차기총재 연수회)

PETS 의 경우, 로타리클럽의 차기회장들만을 위한 회합이지만, 영어 약자로 인해 라틴계 로타리안들은 차기회장과 총무, 재무 등을 위한 회합과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 부족은 로타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로타리 프로그램 및 주요 활동에 대한 명칭을 RI 주요 언어로 공식 표기하거나, 영어 약자와 더불어 이들 언어의 약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10

RI 회장 대리는 방문 지역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선정할 것

RI 회장대리가 방문 지역의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청중과의 이해 및 소통이 어렵다.

따라서 RI 회장 대리는 방문 지역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13

힌두어를 RI 공식 언어에 포함시킬 것

힌두어를 RI 공식 언어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19

러시아어를 RI 공식 언어에 포함시킬 것

RI 웹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나,

로타리 활동이 활발한 많은 국가에서 영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로타리 회원들 또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로타리 업무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러시아어를 RI 공식 언어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22

6 월 14/16 일 이전에 연차 국제대회를 개최

매년 6 월 14/16 일 이전에 국제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23

국제대회 프로그램 변경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99 페이지)

제 9 조 국제대회

9.130. 국제대회 프로그램

국제대회 위원회가 보고한 것으로, 이사회가 승인하고 국제대회가 채택한 프로그램이 모든 회의의 의사 일정이 된다. 프로그램은 국제대회에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하는 대의원 및 대리인의 이사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24

국제대회 스폰서 지구 로타리안들의 대회 등록비를 할인해 줄 것

제 5840 지구는 2001년 6월 24-27일, 미국, 텍사스, 산 안토니오에서 개최된 RI 국제대회 스폰서 지구였다.

수백명의 제 5840 지구 로타리안들이 비싼 등록비 때문에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제로타리는 국제대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로타리안들에게 국제대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폰서 로타리안들에게 등록비를 할인해 주면, 다음 국제대회에는 정규 등록비를 지불하고도 반드시 참석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대회 특별 위원회(Ad Hoc Committee on Conventions)가 제출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줄 것을 결의한다:

국제대회 호스트 지구 로타리안 및 게스트들에게 1일 등록비(정규 등록비의 25%)로 국제대회 개회식과 폐회식 사이의 날짜에 (보통 월요일과 화요일) 참석할 수 있게 한다. 1일 등록비 유효 기간은 2일 동안으로서, 그 중 하루(월요일 또는 화요일)만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등록비이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25

존 연수회를 로타리 연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RI 세칙에 포함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요람 226페이지

제 17 조 회계 사항

17.060. 5 개년 재정 예측

17.060.4. 존로타리 연수회에 5 개년 재정 계획 제출
이사회는 존로타리 연수회에서의 토론을 위해 5 개년 재정 예측을 존로타리
연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9조(절차 요람 228페이지)

제 19 조 기타 회의

19.020. 로타리 연수회

회장은 RI 전, 현, 차기 임원들과 컨비너가 초청한 게스트들이 참석하는 로타리
정보를 위한 연례 회합인 로타리 연수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로타리 연수회는
RI, 존, 존 내 지역 또는 존 합동으로 개최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28

RI 회장 피지명자의 선출 규정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99 페이지)

제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거 - 일반 규정

10.010. 최적격 로타리안

최적격 로타리안들이 RI 선출직 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추후 조항들의 번호는 조정된다)

10.0560.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및 유세 지원

10.0560.1. 금지된 활동

최적격 로타리안들을 RI 선출직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 선출 과정에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운동, 여론 조사, 유세 지원 혹은 기타의

활동은 어느 것도 금지된다. 로타리안들은 RI의 선출직을 위하여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또는 지원 유세를 하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을 대신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이사회가 명백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타리안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클럽이나 클럽 회원에게 전자매체와 커뮤니케이션을 비롯, 책자, 자료집, 서신, 기타 인쇄물을 배포 또는 회람시킬 수 없다. 후보자가 어떤 금지된 활동이 자신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즉각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러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10.0560.3. 이사회 심의

이사회는 그러한 이의 제기를 신중히 심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의 제기를 기각하거나, 선출직 후보자를 실격시키거나 또는/동시에 향후 RI 선출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실격시키거나, 기타 이사회가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을 실격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실격 조치에 대한 해당 RI 직책과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본 세칙 제 10.060.1 을 위반하는 로타리안들에 대해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본 세칙 제 5.020.항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그러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이사회가 접수 일자의 연기를 허락하지 않는 한, 국제대회가 개최되기 최소한 5 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국제로타리 세칙 제 11 조(절차요람 203 페이지)

제 11 조 회장 지명 및 선거

11.030. 회장 지명위원회 위원 선거

11.030.1. 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통보

사무총장은 다음 연도 지명위원회에서 봉사할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전 이사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신은 103월 15일과 3015일 사이에 발송한다. 서신에는 전 이사들이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고려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수록되기를 희망하는지 등에 대한 의사를 124월 3115일까지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4월 3115일까지 회답이 없는 전 이사들은 위원회에서 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1.030.2. 1 개 존에 유자격 전 이사가 1 명인 경우

위원회에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격있는 전 이사가 존에 단 1 명밖에 없는 경우, 회장은 그러한 전 이사를 해당 존을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공표한다.

11.030.3. 1 개 존에 유자격 전 이사가 2 명 이상일 경우

1 개 존에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격있는 전 이사가 2 명 이상 있을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교체 위원을 우편 투표로 선출한다. 우편 투표에 대한 절차는 아래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030.3.1. 투표 용지 준비

사무총장은 투표 용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투표는 가능하면 단일 이양식으로 한다. 투표 용지에는 모든 자격있는 전 이사들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1.030.3.2. 투표 용지 서식

사무총장은 25월 115일까지 존 내 모든 클럽들에게 투표 용지 1 매를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 용지에는 전 이사들의 성명, 소속 클럽, RI 임원 및 국제 위원회 지명 경력과 봉사 기간 등에 대한 약력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표 용지는 46월 1530일까지 세계본부 사무총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는 안내서를 첨부하여 우송한다.

11.030.4. 클럽 투표

각 클럽은 최소한 1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회원 수가 25 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 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가 실시되는 날짜 이전의 가장 최근의 반기 회비 납부 날짜 현재의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11.030.5. 투표위원회 회합

회장은 회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투표 용지를 조사하고 집계할 투표위원회를 지명하여야 한다. 투표위원회의 회합은 47월 2510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투표위원회는 회의 폐회 후 5 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투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40. 위원회 임무 수행 절차

11.040.3. 위원회에 ~~지명서~~ 명단 제출

사무총장은 매년 75월 1일과 75월 15일 사이에 RI 회장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춘 모든 ~~전 이사로~~ 타리안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신에는 그러한 ~~전 이사로~~ 타리안들이 회장 피지명자로 고려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회장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수록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86월 313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6월 3130일까지 회답이 없는 ~~전 이사~~ 사람들은 지명위원회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총장은, 지명위원회가 소집되면, 차기 회장으로 고려되기를 원하는 ~~전 이사~~ 사람들의 명단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11.050. 선거위원회에 의한 지명

11.050.1. 최적격 로타리안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회장으로 봉사할 의사를 표명한 전 이사들 중에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격 로타리안을 지명하여야 한다.

11.050.2.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408월 415일 이전에 이사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

11.050.3. 정족수와 투표

회장 지명위원회의 정족수는 12 명이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과반수 투표로 처리된다. 단, 회장 피지명자를 선출할 경우에는, 최소한 10 명 이상의 위원이 해당 피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1.060. 위원회 보고서

클럽에 우송할 위원회 보고서는 위원회 회의 후 10 일 이내에 사무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를 접수한 후 재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신속한 방법으로, 어느 경우든 30 일 이내에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각 클럽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070. 클럽의 추가 지명

위원회의 지명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전 후보자들이 지명될 수 있다.

11.070.1. 과거에 심의된 후보자 및 이에 대한 찬성

모든 클럽은 본 세칙 제 11.040.3.항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회장 피지명자로 고려되기를 원한다고 통보했던 자격 있는 로타리안을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도전 후보자의 명단은 클럽 주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의는 지구대회에서 또는 우편 투표를 통하여 지구 클럽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그러한 찬성 사실의 증거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서에는 도전 후보자가 자신의 후보 지원서를 클럽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힌 후보자의 서면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상기 절차는 해당 연도 4210월 1 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11.070.2. 도전 후보자에 대한 클럽 통보

사무총장은 추천된 도전 후보자들을 클럽들에게 통보하고 그러한 도전 후보자를 승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양식을 클럽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4210월 1 일이 지난 즉시 그러한 통보와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11.070.3. 도전 후보자의 부재

도전 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은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회장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11.070.4. 도전 후보자 승인

411월 15 일 현재, 도전 후보자가, 전년도 7 월 1 일자로 RI 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클럽들 중 1 퍼센트 이상의 클럽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최소한 반

이상은 도전 후보자 소속 존이 아닌 다른 존 내 클럽들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한 도전 후보자와 위원회의 피지명자를 상대로 본 세칙 제 11.100.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도전 후보자가 411월 15일까지 전술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회장은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회장 피지명자로 발표한다.

11.070.5. 승인의 유효성

본 세칙 제 11.100.1.항에 규정된 투표위원회는 반송된 승인서와 보고서를 검증, 계산 및 확인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표위원회가 승인서 숫자가 도전 후보자의 승인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승인서의 진위에 의심이 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위원회는 이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발표 전에 RI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러한 승인서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후 투표위원회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80. 11.030 – 11.070 항에 대한 잠정 조항

11.030., 11.040., 11.050. 그리고 11.070. 항에 관해 2007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되는 규정은 2008-2009 로타리 연도에 봉사하는 지명위원회에 최초로 적용된다.

(추후 조항들의 번호는 조정된다)

그리고 제 16 조(절차 요람 223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090. 권한

모든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은 본 세칙 제 5.030.2 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회장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조치와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장 피지명자를 선출하는 회장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제외된다. 그리고 본 세칙 제 10.060.1 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결정과 조치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30*

RI 회장 피지명자의 선출 규정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03 페이지)

제 11 조 회장 지명 및 선거

11.040. 위원회 임무 수행 절차

11.040.1. 위원회 위원 명단 통보

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위원 선발 후 1 개월 이내에 이사회와 각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11.040.3. 위원회에 지명서 제출

사무총장은 매년 7월1일과 7월 15일 사이에 RI 회장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춘 모든 전 이사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신에는 전 이사들이 회장 지명자로 고려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회장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수록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8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월 31일까지 회답이 없는 전 이사들은 지명위원회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총장은, 지명위원회가 소집되면, 지명위원회 회의 적어도 1주일 전까지 차기 회장으로 고려되기를 원하는 전 이사들의 명단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하며 로타리안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11.050. 선거위원회에 의한 지명

11.050.2.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10 월 1 일 이전에 이사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31

RI 회장 지명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늘릴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01-204 페이지)

제 11 조 회장 지명 및 선거

11.020. 회장 지명위원회

11.020.1. 구성 방법

회장 지명위원회는 RI 이사 지명을 위하여 편성된 34 개 존 중에서 선출된 17 3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가) 짝수 연도에는 모든 홀수 번호 존에서 1 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나) 홀수 연도에는 모든 짝수 번호 존에서 1 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11.050. 선거위원회에 의한 지명

11.050.3. 정족수와 투표

회장 지명위원회의 정족수는 1224 명이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과반수 투표로 처리된다. 단, 회장 피지명자를 선출할 경우에는, 최소한 4020 명 이상의 위원이 해당 피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35*

이사 지명위원회 위원의 자격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07-208 페이지)

제 12 조 이사의 지명 및 선출

12.02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

12.020.2. 지명위원회의 위원

지명위원회는 존 또는 구역 내의 각 지구들이 아래에 규정된 바에 따라 1 명씩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때 지구총재로서 봉사한 최소한 3년이 지난 전 총재로서 관련 구역이나 존 내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지구총재가 된 아래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기 전 3년 동안,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하는 존의 존 연수회에 최소한 2 회 이상의 연수회와 그리고 국제대회에 1 회 이상의 국제대회에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 년이다. 회장, 차기 회장, 전 회장, 이사 또는 전 이사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2 회를 봉사한 로타리안은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1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39

지구총재 피지명자의 자격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0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70. 총재 피지명자 자격

15.070.1. 모범적인 로타리안

해당 로타리안은 지구 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로타리 클럽의 모범적인 회원이어야 한다.

15.070.2. 완전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로타리안

해당 로타리안은 회원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회원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의 직업분류의 정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15.070.3. 정상적인 클럽의 회원

~~해당 로타리안은 총재 피지명자로 추천되는 연도의 전년도 말 현재 RI 또는 지구에 대한 미납금이 없는 모범적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40

지구총재 피지명자 선출 일자 변경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2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10. 총재 피지명자 선출

지구는 총재 취임 일자로부터 ~~3036~~ 36개월 전에 그리고 늦어도 24개월전까지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항목에 규정된 일정을 연장할 권한을 갖는다. 선출된 피지명자는 국제협의회에서 연수를 받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차기총재로 선출된다. 선출된 피지명자는 차기총재로 1년간 봉사하고, 선출된 다음 해의 7월 1일부로 총재직에 취임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41

지구총재 지명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2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20. 총재 지명 절차

13.020.1. 지구총재 지명 방법

RI비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구는 본 조항에 명시된 또는 우편 투표(제 13.040 항)지명위원회의 절차에 따르거나 지구대회에서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해야 하며, 지구대회에 참석한 클럽의 선거인단 다수가 찬성하여 통과된 제정안에 의거하여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3.020.12. 총재 지명위원회

RI비 지구들을 제외한 모든 지구는 지명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구의 규모, 재정적인 문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한 지구의 경우, 총재

지명위원회는 총재 피지명자 후보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물색하여 추천할 책임이 있다. 위원 선출 방법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권한은 지구대회 클럽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채택하는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권한은 세칙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13.020.23.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본 세칙 제 13.020.42 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구총재 선출을 위한 지명 위원회 절차는 채택하였으나, 적합한 위원을 선발하지 못한 지구는 지명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을 채택하지 못한 지구는 현재 해당 지구 클럽 회원으로 있는 가장 최근의 전 총재 5 명을 지명 위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본 세칙 제 13.020.항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 총재가 5 명이 되지 않을 경우, RI 회장은 해당 지구 내의 책임자를 추가로 지명하여 위원회 위원이 5 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020.34. 클럽의 총재 추천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한 지구의 경우, 총재는 각 클럽에 총재 지명을 위한 추천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총재가 정하여 발표한 기일 내에 추천서가 도착하면 지명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추천서의 지명위원회 접수 마감일 2 개월 전까지 그러한 내용이 지구 내 클럽들에게 발표되어야 한다. 발표 내용에는 추천서를 우송해야 하는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클럽은 주회 결의로 채택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의는 클럽 총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클럽은 클럽 회원 중 1 명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타 클럽 회원을 총재 피지명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단, 추천 클럽은 먼저 해당 클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020.45. 위원회의 최적격 로타리안 지명

지명위원회는 지구 클럽들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총재를 지명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총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격의 로타리안을 지명하여야 한다.

13.020.56. 지명 통보

지명위원회는 선출한 후보자를 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후 총재는 지구 클럽들에게 피지명자들의 명단과 소속 클럽을 발표한다.

13.020.67. 위원회가 피지명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지명위원회가 후보자 선출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총재 피지명자는 본 세칙 제 13.040.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또는, 제 15.050.항에 따라, 지구대회에서 지명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13.020.78. 도전 후보자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활동한 모든 클럽은 총재 피지명자에 대한 도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미만 활동한 클럽의 경우라도, 후보자가 클럽 회원이면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러한 도전 후보자는 기히 지명위원회에 정식으로 추천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도전 후보자의 명단은 클럽 주회에서 채택한 결의로 제출되어야 한다. 클럽은 그러한 결의를 총재가 정하는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마감일은 지명위원회의 총재 피지명자 선출 발표로부터 최소한 2 주 후가 되어야 한다.

13.020.89. 도전 후보자에 대한 동의

총재는 상기 조항에 따라 추천된 모든 도전 후보자의 명단을 RI가 정한 양식으로 모든 클럽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재는 또한 도전에 동의하는 클럽이 있는지도 조회하여야 한다. 도전에 동의하기로 한 클럽은 주회에서 채택한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구 내 해당 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클럽 중 최소한 5개의 다른 클럽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지구 클럽 총수의 10퍼센트 이상 (두 가지 중 클럽 수가 더 많은 경우를 적용)의 동의를 받은 도전 후보자만이 도전 자격을 갖는다.

13.020.910. 도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도전 후보자 추천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총재는 지구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한다. 그러한 발표는 도전 후보자 추천서 마감일 이후 15일 이내에 지구 내 모든 클럽들에게 하여야 한다.

13.020.4011. 도전 후보자의 지명

마감일 이전에 도전 후보자 지명서가 접수되었으며, 마감일 후 15일 동안 효력이 지속될 경우, 지구총재는 이를 지구 클럽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도전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 요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후보자를 상대로 우편 투표 또는 지구대회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13.020.4412. 도전 후보자 지명의 효력 상실

도전 후보자 지명이 상기 15일 이내에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총재는 지구 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모든 클럽들에게 15일 이내에 총재 피지명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3.020.4213. 지구대회에서의 총재 피지명자 선출 투표

지구대회에서의 투표는 가능한 한 우편 투표 규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표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13.030. 예외적인 상황: 우편 투표에 의한 선출

제 13.020.1 항 규정에 의해 상황에 따라 우편 투표가 필요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지구는 지명위원회의 도움없이 우편 투표로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할 수 있다.

13.030.1. 절차

총재는 지구의 모든 클럽 총무들에게 총재 지명 공식 요청서를 우송하여야 한다. 모든 지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클럽의 회장과 총무가 서명하여야 한다. 클럽이 지명한 후보자가 해당 클럽의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후보자의 소속 클럽으로부터 동의를 있어야 한다. 클럽은 클럽 회원 중 1명을 총재 피지명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지명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마감일은 총재 지명 공식 요청 일자부터 최소한 1 개월 후가 되어야 한다. 클럽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1 명뿐일 경우에는 투표할 필요가 없으며, 총재는 그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50*

총재 특별 선거에 관한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5-216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60. 지명서 효력 유지 불능~~

~~국제협의회 개최 전 최소한 3 개월 동안 총재 지명이 효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총재는 본 세칙 제 13.030.1.항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13.0760. 총재 피지명자의 거부 또는 일시 보류

13.0760.1. 자격 미달

소정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총재 피지명자의 지명은 거부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피지명자의 명단을 국제대회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3.0760.2. 지명의 일시 보류

총재 피지명자가 서명한 진술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명자가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임무와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지명을 일시 보류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보류 사실을 총재와 피지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피지명자에게는 총재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총재와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피지명자가 제출하는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심의한 후, 3 분의 2 의 찬성에 의해 피지명자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13.0760.3. 피지명자의 거부

피지명자의 지명이 이사회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사무총장은 관련 지구의 총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거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총재는 이를 해당 피지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간이 허락할 경우, 총재는 다른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기 위해 세칙 규정에 따라 지구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구가 자격있는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피지명자는 본 세칙 제 13.0870.항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13.0870. 특별 선거

지구가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하거나 총재 피지명자가 선출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한 경우, 혹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는데도 지구가 국제대회 연차 임원 선출 전까지 다른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지구총재는 본 세칙 제 13.020 항에 따라 지명 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대회에서 선출된 지구총재 피지명자가 최소한 국제협의회를 3 개월 남겨놓고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구총재는 본 세칙 제 13.030.1 항에 따라 지명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이사회는 본 세칙 제 15.070 항에 따라 자격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명된 로타리안을 차기총재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투표는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 이후 만약 차기총재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이사회는 본 세칙 제 15.070 항에 따라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선출하여 공석을 메우도록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51

우편 투표 조항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4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40. 우편 투표 서식

총재는 이사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지구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 용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지구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명단 다음에 총재에게 접수된 후보자들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기입한다. 후보자가 2 명 이상일 경우, 투표는 단일 이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총재는 기명 투표 용지를 총재에게 반송하여야 한다는 안내서와 함께 투표 용지 1 매를 모든 클럽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 용지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반송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감일은 총재가 투표 용지를 우송한 날부터 15 일 이후 30 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 각 투표 용지는 한 표로 간주된다. 지구총재는 각 클럽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 만큼의 투표 용지를 각 클럽에 우송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52

우편 투표 서식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4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40. 우편 투표 서식

13.040.3. 과반수 혹은 동점 투표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해당 지구의 총재 피지명자로 발표되어야 한다. 만약 두 후보자가 각각 50 퍼센트를 득표하였고, 그 중 한 후보자가 지명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라면, 지명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가 총재 피지명자가 된다. 만약 두 후보자 중 누구도 지명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가 아니라면 지구총재가 두 명 중 한 명을 총재 피지명자로 선출한다.

~~13.040.5. 과반수 이하 투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두 사람을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두 번째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해당자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킨다. 1차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2차,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두 후보자가 투표, 혹은 결선 투표에서 각각 50 퍼센트씩을 득표하였으며 그 중 한 후보자가 지명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일 경우,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총재 피지명자가 된다. 두 후보자 모두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아닌 경우, 지구총재가 그 중 한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선출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56

지구총재 임무 중 로타리 단체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추가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0-221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90. 총재 임무

총재는 지구의 RI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클럽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RI 강령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지구총재는 지구 및 클럽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사회가 개발한 지구 지도부 재편성 계획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지구 내 클럽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효율적인 클럽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전, 현, 그리고 차기

지구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총재는 다음의 지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가) 신생클럽의 결성;
- (나) 기존 클럽의 강화;
- (다) 지구 지도부 및 클럽 회장들과 협력하여 지구 내 각 클럽의 현실적 회원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회원증강을 촉진;
- (라) 프로그램 참여 및 재정 기부로 로타리재단 후원;
- (마) 클럽간 그리고 클럽과 RI 간의 돈독한 관계 증진;
- (바) 지구대회 계획 및 주재, 그리고 차기총재의 차기회장 연수회 및 지구협의회의 계획과 준비를 지원;
- (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지구총재의 참석으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연례 공식 방문이나 여러 클럽들의 합동 주회 준비:
 - 1. 로타리의 중요한 문제에 관심 집중,
 - 2. 어려움에 처한 취약 클럽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표명,
 - 3.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로타리안들에게 동기 부여, 그리고
 - 4. 지구 내 로타리안들의 탁월한 헌신을 직접 표창.
- (아) 지구 내 모든 클럽회장 및 총무에게 총재 월신 발송;
- (자) 회장이나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RI 에 보고;
- (차) 클럽 증강에 필요한 권장 사항과 함께 클럽 상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국제협의회 이전에 차기총재에게 제공;
- (카) 지구 지명 및 선출이 RI 정관, 본 세칙, 그리고 RI 의 기존 방침에 따라 시행되도록 보장;
- (타) 지구내 로타리 단체 활동(우정교환, 국가간 위원회, 글로벌 네트워킹 그룹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파~~) 지금까지의 각종 지구 문서철을 차기총재에게 인계;
- (~~파~~)(하) RI 임원으로서의 기타 고유 임무 수행.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60

임원 지명에 대한 규정을 바꿀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99 페이지)

제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거 일반 규정

10.030. 지명 부자격자

10.030.1.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의 위원, 교체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선출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나중에 사임하는 후보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 등은 해당 지명위원회가 활동하는 연도 동안에는 임원으로 지명될 수 없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61

RI 부회장을 임기 2년차 이사들 가운데서 선정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3 페이지)

제 6 조 임원

6.020. 부회장 및 재무의 선정

6.020.1. 부회장 선정

부회장은과 재무는 취임하는 회장이 첫 번째 이사회에서 임기 2년차 이사들 가운데서 선정하며, 7월 1일부터 1년간 봉사한다.

6.020.2. 재무 선정

~~재무는 매년 취임하는 이사회의 임시 회합에서 임기 2년차 이사들 가운데서 차기 회장이 선정하며, 7월 1일부터 1년간 재무로 봉사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68

선거 이의 제기 절차 개정

절차 요람에 설명되어 있는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에 의하면 후보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로타리클럽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치 않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이의 제기 서한 사본을 로타리클럽에 우송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이의 제기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클럽에 부여하는 내용을 절차 요람의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에 포함시켜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83

회원 1 인당 회비 증액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4-226 페이지)

제 17 조 회계 사항

17.030. 회비

17.030.1. 회원 1 인당 회비

모든 클럽들은 클럽 회원 수 각각에 대한 1 인당 회비를 다음과 같이 RI 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4-2005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19 달러 50 센트, 2005-2006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1 달러 50 센트, 2006-2007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3 달러 50 센트, 2007-2008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3 달러 50 센트, 2008-2009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4 달러, 2009-2010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4 달러 50 센트, 2010-2011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5 달러이다. 단, 모든 클럽들은 2005-2006 년도에 최소한 미화 215 달러를, 2006-07 년도 및 그 이후에는 최소한 미화 235 달러를 2007-2008 년도에는 최소한 미화 235 달러를, 2008-2009 년도에는 최소한 미화 240 달러를, 2009-2010 년도에 최소한 미화 245 달러를, 2010-2011 년도에는 최소한 미화 250 달러를 반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회비는 규정심의회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17.040. 납부일

17.040.2. 비례 할당 회비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매년 7 월이나 1 월 반기 보고 이후에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 각 회원에 대하여 클럽은 다음과 같이 비례 할당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4-2005 년도에는 미화 9 달러 75 센트, 2005-2006 년도에는 미화 10 달러 75 센트 2006-07 년도에는 미화 11 달러 75 센트 2007-2008 년도에는 미화 11 달러 75 센트, 2008-2009 년도에는 미화 12 달러, 2009-2010 년도에는 미화 12 달러 25 센트, 2010-2011 년도에는 미화 12 달러 50 센트. 그러나 본 세칙 제 4.030.항에 규정된 이적 회원 또는 다른 클럽의 전 회원에 대해서는 비례 할당 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 인당 비례 할당 회비는 10 월 1 일과 4 월 1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액수는 규정심의회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87

RI 회원 1 인당 연회비의 1/12 를 신입회원 비례 할당 월(月) 회비로 납입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5 페이지)

제 17 조 회계 사항

17.040. 납부일

17.040.2. 비례 할당 회비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매년 7 월이나 1 월 반기 보고 이후에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 각 회원에 대하여 클럽은 다음과 같이 비례 할당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4-2005 년도에는 미화 9 달러 75 센트, 2005-2006 년도에는 미화 10 달러 75 센트
그리고 2006-2007 및 그 이후에는 미화 11 달러 75 센트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 각
회원에 대하여 클럽은 다음 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례 할당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례 할당 월(月)회비는 RI 회원 1 인당 연회비의 1/12 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러나,
본 세칙 제 4.30.항에 규정된 이적 회원 또는 다른 클럽의 전 회원에 대해서는 비례 할당
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 인당 비례 할당 회비는 407 월 1 일과 41 월 1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액수는 금액은 규정심의회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90*

일반 잉여금의 보유 수준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6 페이지)

제 17 조 회계 사항

17.050. 예산

17.050.6. 예산 수입 초과 경비; 일반 잉여금

본 세칙 제 17.050.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잉여금이 연차 국제대회 및
규정심의회에 대한 자체 지출을 제외한 가장 최근 3 년 동안의 최고 연간 경비의
1008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4 분의 3 의 찬성으로 예산 수입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지출이 일반 잉여금 85 퍼센트 수준을
100 퍼센트 이하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회장은 60 일 이내에
그러한 초과 경비의 내역과 이를 초래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RI 의 모든
임원에게 보고하고, 또한 다음 국제대회에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91

RI 회비 및 지구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클럽들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78-179 페이지)

제 3 조 RI 회원 자격 종결, 정지 및 탈퇴

3.030. 이사회에 클럽 징계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종결 권한

3.030.1. 회비 미납에 따른 자격 정지 또는 종결

이사회는 회비나 기타 RI 에 대한 재정적 의무 또는 지구 기금으로 승인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클럽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3.030.2. 기능 상실에 따른 자격 종결

이사회는 클럽이 어떤 이유로 해산되거나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지 않거나 또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클럽의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기능 상실로 클럽의 회원 자격을 종결시키기 전에, 이사회는 지구총재에게 자격 종결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030.3. 정당한 이유에 의한 징계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클럽을 징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계 내용, 청문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이 명시된 서류를 최소한 청문회 개최 30 일 전에 해당 클럽의 회장과 총무 앞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클럽은 청문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청문회 이후,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클럽을 징계 또는 자격을 중단시키거나 만장일치 찬성으로 클럽을 축출할 수 있다.

3.040. 자격이 정지된 클럽의 권리 포기

이사회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자격 정지된 날짜로부터 RI 세칙이 허용하는 클럽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지만, RI 정관이 허용하는 클럽의 권리는 유지할 수 있다.

3.0450. 자격이 종결된 클럽의 권한 포기

클럽의 회원 자격이 종결되면 RI 의 명칭과 휘장 그리고 기타 기장 사용에 관한 특전이 중단된다. 그러한 클럽은 회원 자격이 종결되는 동시에 RI 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가질 수 없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전 클럽의 회원 가입 증서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92

용도 제한이 없는 RI 순자산에 대한 RIBI 기부금 증액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4 페이지)

제 17 조 회계 사항

17.030. 회비

17.030.4. RIBI 의 회비 납부

RIBI 지역의 모든 클럽들은 본 세칙 제 17.030.1.항의 규정에 따라 RI 에 개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030.1.항의 규정에 따라 RIBI 지역의 클럽들이 반기별로 RI 에 납부하는 회비 총액은 RIBI 지역의 클럽들을 위하여 RI 가 매년 지출하는 경비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한 클럽들이 납부하는 1 인당 회비의 잔액은 RIBI 에 배분하여 보유하도록 한다.

17.030.5. RI 보관 비율

본 세칙 제 17.030.4.항의 규정에 따라 RIBI 지역에 있는 클럽들이 RI 에 보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납부하는 1 인당 회비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 연도에 이들 클럽이 납부하여야 할 1 인당 회비에 적용된다. 그러한 이사회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로타리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한 RI 의 일반 관리비 가운데 RIBI 의 비례 부분을 비롯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RI 가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RI 의 매배당 기금용도 제한이 없는 순 자산에 대한 반기당 기부금 미화 ~~50 센트(\$.50)~~ 1 달러를 추가한다.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경험, 현재의 상황 및 예측 가능한 향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 6 년마다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금액을 인상, 유지 또는 인하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293

5 개년 재정 계획 존 연수회 발표자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6 페이지)

제 17 조 회계 사항

17.060. 5 개년 재정 예측

17.060.4. 존 연수회에 5 개년 재정 계획 제출

이사회는 각 존 연수회에서 토론을 위해 5 개년 재정 예측을 존 연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는 이사회 이사가 혹은 이사회를 대리하는 사람이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295

경비 절감을 위한 팀 구성

국제로타리는 회비를 인상시켰으며,

회원들은 검소한 단체 운영과 지출 효율성에 관해 의문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경영 및 컨설팅 분야의 경험있는 로타리안들로 구성된 경비 절감을 위한 팀을 구성하여 개선점을 찾아,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01

규정심의회 대의원 선출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9-173 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020. 규정심의회 투표권이 있는 의원의 자격

8.020.3. 자격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자격과 임무 및 책임 등에 대한 정보가 해당 로타리안에게 전달된 후, 이를 이해하고 그러한 임무와 책임을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는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총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8.020.34. 무자격자

규정심의회 투표권이 없는 의원과 RI, 지구 또는 클럽의 상근 유급직 직원은 규정심의회 투표권 있는 의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없다.

8.050. 선거인단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8.050.1. 선거출

본 세칙 제 8.060. 및 8.070.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은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도전 후보자 추천 및 선거 결과를 포함한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해당 규정심의회 개최 2년전 연도에

시행, 완료되어야 한다. 지명위원회 절차는 본 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세칙 제 13.020 항에 규정된 총재 지명 절차에 기초하여야 한다. 대의원 후보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규정심의회 소집 2년전 연도에 개최되는 연차 지구대회에서 선출된다. RIBI 지역에서는 규정심의회 소집 2년전 연도의 10월 1일 이후에 개최되는 지구 심의회 회합에서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을 선출한다.

8.050.2.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였으나, 위원을 선발하지 못한 지구는 현재 해당 지구 클럽 회원으로 있으며 위원으로 봉사할 의향이 있는 전 총재들을 지명 위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는 지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8.050.3.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이 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이 모두 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총재는 지구 내 클럽의 다른 자격있는 회원을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8.050.2. 자격 요건

규정심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로타리안은 대의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50.2.1. 대의원의 자격 요건, 임무 및 책임을 이해하고 있음;

8.050.2.2. 대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임무와 책임을 수용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

8.050.2.3.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할 것임.

8.06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8.060.1. 선거

만일 지구가 지명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연차 지구대회 또는 RIBI 지역의 경우 지구 심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선거는 규정심의회 소집 2년전 연도에 개최되는 지구대회 또는 RIBI 지역의 경우 규정심의회 소집 2년전 연도 10월 1일 이후에 개최되는 지구심의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8.0560.32. 지명

클럽은 대의원으로 봉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표명한 지구 소속 클럽의 자격있는 회원들 가운데 1명을 대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클럽은 그러한 지명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지명서에는 클럽회장과 총무가 서명해야 한다. 지명서는 총재에게 접수시켜 지구대회 클럽 선거인들에게 제출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구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거인들은 대의원 선거에서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8.0560.43.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규정심의회 대의원이 된다. ~~차점자는 교체 대의원이 되는데, 교체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교체 대의원이 된다. 교체 대의원은 선출된 대의원이 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의원으로 봉사한다.~~

8.0560.54. 단일 후보자

지구에 추천된 후보자가 1명 밖에 없으면 투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지구총재는 그 후보자를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선언한다.

8.050.6.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이 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이 모두 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총재는 지구 내 클럽의 다른 자격있는 회원을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8.0670. 우편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

8.0670.1. 이사회의 우편 투표 승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지구의 우편 투표를 통한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의 선출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총재는 지구 내 모든 클럽 총무에게 대의원 지명 공식 요청서를 준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클럽의 모든 지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클럽회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지명서는 지구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지구총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가나다순으로 자격있는 후보자들을 명시한 투표 용지를 각 클럽에 보내 우편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투표지의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지구총재가 정한 마감일 전에 서면으로 접수시키면, 그 이름은 투표지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각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이 있다. 25명을 초과하는 회원을 가진 클럽은 매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1표의 추가 투표권을 갖는다. 클럽 투표권 수는 대의원 선출 예정일 이전의 최근 반기 회비 납부금을 기준으로 한 회원 수에 의거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지구총재는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편 투표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0670.2. 우편 투표에 의한 선거

지구대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도 우편 투표에 의한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한 우편 투표는 연차 지구대회 개최 직후의 바로 다음 달에 실시되어야 한다. 우편 투표는 본 세칙 제 8.060.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8.07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대의원 선출

~~지구대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선거인들의 다수결 투표로 지구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해 선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해당 규정심의회 지구 대의원 선출 마감 기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승인되어야 하며, 도전 후보자 추천 및 선거 결과를 포함한 대의원 지명은 해당 규정심의회 개최 2년전 연도에~~

시행, 완료되어야 한다. 지명위원회 절차는 본 세칙 제 13.020 항에 규정된 지구총재 지명위원회 절차에 기초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04

규정심의회 입법안 상정 일정을 개정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75 페이지)

제 16 조 개정

제 2 항 — 제안자. RI 정관 개정은 클럽, 지구대회, 영국 및 아일랜드 RI 심의회나 대회, 규정심의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서만이 세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될 수 있다.

제 3 항 — 절차

(가) RI 정관 개정안은 규정심의회 소집 연도의 전년도 6 월 30 일 이전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나) RI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 소집연도의 12 월 30 일까지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개정안의 사본 10 부를 각 지구총재에게 우송하고, 모든 규정심의회 대의원과 개정안을 요청한 클럽 총무들에게 사본 1 부씩을 우송하여야 한다. 입법안은 로타리 월드 와이드 웹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규정심의회는 규정심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각 개정안과 이에 관련하여 제정된 개정안을 심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7 페이지)

제 7 조 입법 절차

7.035. 제정안 및 결의안 제출 마감일

제정안 및 결의안은 규정심의회 개최 전년도 6 월 30 일 12 월 31 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제정안은 규정심의회 연도 12 월 31 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결의안은 규정심의회나 이사회에 의해서도 제안될 수 있으며, 심의회 폐회 이전 아무 때나 심의회에 의해 결의될 수 있다.

7.040. 제안된 입법안 심의

정관 및 세칙위원회는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모든 입법안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들을 할 수 있다:

7.040.4.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판단한 입법안들을 사무총장이 규정심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이사회에 권고한다;

(가) 정식으로 제안되지 않았거나, 또는

(나)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입법안에 대해, 그러한 하자 또는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변경안의 권고를 제안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안자에게
통보하였지만 규정심의회 개최 90 일 전까지 필요한 수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7.050.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이사회 심사

7.050.2. 규정심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입법안

제안된 입법안이 (1)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2) 하자가 있어 적절한 변경을 권고했지만 제안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하는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제 7.040.4.항에 따른 정관 및 세척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안된 입법안을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지 않도록 사무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사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곧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가 해당 입법안을 규정심의회에서 심의되게 하려면 규정심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50.3. 범주를 벗어난 결의안

이사회는 (이사회를 대신하는 정관 및 세척 위원회에 의하여 0 모든 제안된 결의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관 및 세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RI의 프로그램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제안된 결의안들을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정관 및 세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RI의 프로그램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의안들을 규정심의회 심의회 회부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사회가 그렇게 판단할 경우, 규정심의회 회합 소집 이전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가 해당 결의안을 규정심의회에서 심의되도록 하려면 규정심의회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50.4. 입법안 및 개정안의 규정심의회 제출

본 세척 제 7.050.2.항에 의거하여, 사무총장은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입법안에 대한 모든 개정안들을 포함하여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들을 심의회 소집 2개월 전까지 규정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에 제출한다. 이러한 입법안에 대한 개정안은 이사회(정관 및 세척 위원회가 대행)가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은 한, 제안자에 의해 규정심의회 소집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7.050.5. 제안된 입법안 공표

RI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 소집 연도의 12월 31일 9월 30일 이전까지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의 사본 10부를 지구총재에게 우송하고, 전직 이사들과 모든 규정심의회 대의원과 송부를 요청한 클럽 총무에게 사본 1부씩을 각각 우송하여야 한다. 제안된 입법안들은 로타리 월드 와이드 웹 홈 페이지를 통해서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08

지구당 입법안을 5 개까지로 제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7 페이지)

제 7 조 입법 절차

7.030. 클럽 입법안에 대한 지구 심의

클럽의 입법안은 지구대회나 RIBI 지구 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입법안을 지구대회나 RIBI 지구 심의회에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총재는 지구 클럽들을 상대로 우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우편 투표는 가능한 한 제 13.040.항의 규정 절차에 따른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모든 입법안에는 지구대회나 RIBI 지구 심의회에서 혹은 우편투표를 통해 심의되어 지구의 승인을 얻었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어느 지구도 한 번의 규정심의회에 5 개를 초과하는 입법안을 제안, 혹은 승인하지 못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10

결함있는 입법안과 하자있는 입법안의 차이를 없애고,
관련 조항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7 조(절차요람 186-189 페이지)

제 7 조 입법 절차

7.030. 클럽 입법안에 대한 지구 심의

클럽의 입법안은 지구대회나 RIBI 지구 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입법안을 지구대회나 RIBI 지구 심의회에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총재는 지구 클럽들을 상대로 우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우편 투표는 가능한 한 제 13.040.항의 규정 절차에 따른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모든 입법안에는 지구대회나 RIBI 지구 심의회에서 혹은 우편투표를 통해 심의되어 지구의 승인을 얻었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7.037.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결함 및~~ 하자 있는 입법안

7.037.1.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은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이다:

(가) 세칙 제 7.035.항 또는 정관 제 16 조 제 3 항에 규정된 마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경우; 그리고

- (나) 입법안 제안자에 관한 세칙 제 7.020.항의 조건에 맞는 경우; 그리고
- (다) 입법안을 클럽이 제안할 때, 지구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세칙 제 7.030.항의 조건에 맞는 경우.

7.037.2. 결함하자있는 입법안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은 결함하자있는 입법안이다:

- (가) 2 개 이상의 모순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나) 정관 문서의 모든 관련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7.037.3. 하자있는 입법안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은 하자 있는 입법안이다:

- (가)(다) 해당 입법안의 채택이 현행 법에 저촉되는 경우;
- (나)(라) 결의안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RI 정관 문서의 조문이나 정신에 저촉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 (다)(마) RI 세칙 또는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RI 세칙을 개정하는 경우;
- (라)(바) 시행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7.040. 제안된 입법안 심의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모든 입법안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들을 할 수 있다:

7.040.1. 이사회를 대신하여,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입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변경 조치 사항을 제안자에게 권고한다;

7.040.2. 이사회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입법안들의 제안자들에게 절충안을 권고한다;

7.040.3. 제안자들이 절충안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이 유사한 입법안들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대체 입법안을 규정심의회에 제출하도록 이사회에 권고한다;

7.040.4.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판단한 입법안들을들이 정식으로 제안된 것인지, 그리고 하자있는 것인지를 사무총장이 규정심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이사회에 권고한다;

7.040.5. 위원회가 하자있는 입법안으로 판단한 입법안들이 규정심의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이사회에 권고한다;

(가) 정식으로 제안되지 않았거나, 또는

(나)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입법안에 대해, 그러한 하자 또는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변경안의 권고를 제안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안자에게 통보하였지만 규정심의회 개최 90 일 전까지 필요한 수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7.040.56. 제 8.130.2.항에 정의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7.050.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이사회 심사

이사회는 (이사회를 대신하는 정관 및 세척 위원회에 의하여) 모든 제안된 입법안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입법안에 ~~어떠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 가능하면 수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7.050.2. 규정심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입법안

제안된 입법안이 (1)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다고 판단하면 이사회는 규정심의회에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입법안에 (2)하자가 있어 적절한 변경을 권고했지만 제안자가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였지만 제안자가 규정심의회가 개최되기 날로부터 90 일 이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 7.040.4 항에 따른 정관 및 세척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안된 입법안을 규정심의회 심의에 회부하지 않도록 사무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사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곧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가 해당 입법안을 규정심의회에서 심의되게 하려면 규정심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50.4. 입법안 및 개정안의 규정심의회 제출

제 7.050.2 항에 의거하여, 사무총장은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입법안에 대한 모든 개정안들을 포함하여 정식으로 제안된 모든 입법안들을 심의회 소집 2개월 90 일 전까지 규정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절차요람 194 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130. 심의회 운영위원회; 정관 및 세척 위원회의 임무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정관 및 세척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규정심의회 의장은 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8.130.1. 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임무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규정심의회의 절차 규정과 입법안들에 대한 심의 순서를 추천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심의회를 위해, 가능한 경우, 제안된 입법안이나 이의 개정안 가운데 운영위원회나 규정심의회에 의해 확인된 ~~결함 또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개정한 수정안을 입안한다. 또한 심의회 운영위원회는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개정안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표준 클럽 정관과 상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모든 상호 관련 개정안들이 명기된 규정심의회 보고서를 작성한다.

8.130.2. 정관 및 세척 위원회 위원의 추가 임무

정관 및 세척 위원회는 제안된 입법안들이 공표되기 전에 모든 입법안들의 취지 및 효과에 관한 발표문을 검토, 승인한다. 제안된 입법안 공표 직후, 규정심의회 의장은 정관 및 세척 위원회의 각 위원들에게 제안된 입법안들을 배정한다. 이 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배정된 모든 입법안들을 연구하고, 각 입법안의 목적과 배경, 효과, 그리고 결함이나 하자에 관하여 심의회에 보고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11

하자있는 입법안의 범주에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결의안을 포함시킬 것
국제로타리 세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7 페이지)

제 7 조 입법 절차

7.037.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결함 및 하자 있는 입법안

7.037.3. 하자있는 입법안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은 하자 있는 입법안이다:

- (나) 결의안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1) RI 정관 문서의 조문이나 정신에 저촉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혹은 (2) 이사회나 사무총장 재량에 속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청한 경우;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316

규정심의회에서 채택한 제정안은 절차요람 개정 시 원문대로 포함시킬 것

규정심의회는 RI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그러므로,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제정안이 절차요람 개정 시, RI 정관이나, RI 세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에 포함될 때에는 채택 당시의 원문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제정안의 내용이 다른 조항에 포함된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제정안 01-465는 RI 세척 6.130.1 과 6.130.2 항의 내용을 변경, 당시의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으나, 절차요람에는 RI 세척 5.030.3 과 6.130 항에 포함되었다. 이는 RI 세척 원래의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실수는 규정심의회 위상에 좋지 않다.

그러므로,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제정안 내용들은 절차요람 개정 시, RI 정관이나 RI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에 포함될 때에는 채택 당시의 원문 그대로 포함시킬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17

차기 규정심의회 채택이 있을 때까지 현행 규정심의회 절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93 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120. 규정심의회 절차

8.120.1. 절차 규정

본 세칙 제 8.130.항에 따라 각 심의회는 심의 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규정은 차기 규정심의회 채택이 있을 때까지 세칙과 2007 규정심의회 의 현행 절차에 부합되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18

지구대회 투표 절차를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18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50. 지구대회 투표

15.050.1. 선거인

각 클럽은 최소한 1 명의 선거인을 선출, 증명하여 지구대회에 보낼 수 있다. 회원 수가 25 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 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 명의 선거인을 더 보낼 수 있다. 즉, 회원 수가 37 명까지 1 명의 선거인을, 38 명에서 62 명까지 2 명의 선거인을 63 명에서 87 명까지 3 명의 선거인을 선출하게 된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가 실시되는 날짜 이전의 가장 최근의 반기 회비 납부 날짜 현재의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선거인을 보낼 수 없다. 모든 선거인은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구대회에 참석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채택된 제정안 07-329*

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것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71-172 페이지)

제 5 조 회원

제 2 항 - 클럽의 구성

- (가) 클럽은 선량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사업 및 전문직업 분야, 혹은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클럽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직장 또는 주거지가 있는 자로서,
- (1)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유익한 사업 및 전문직업의 소유자, 공동 경영자(partner), 법인체 임원 또는 관리자이거나,
 - (2)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유익한 사업 및 전문직업 또는 그 지점 내지 대리점의 관리자로서 업무 집행상의 재량권을 가진 중요한 지위를 가진 자, 또는
 - (3)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직장 또는 주거지를 가졌다가, 위의 1) 또는 2)에 명시된 지위에서 은퇴한 자., 혹은
 - (4)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과 로타리 강령에 대한 기여를 보여준 사람들.

그리고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으로부터 전출해 나가는 정회원은 해당 클럽의 이사회가 허락하고 또한 회원 자격 요건을 계속 이행할 경우 해당 클럽의 회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 (나) 클럽은 회원들이 특정 사업이나 전문직업, 특정 종류의 지역사회 활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클럽이 동일한 직업분류에 이미 5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업분류에 더 이상의 정회원을 선출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 이상이며 어느 특정한 직업분류에 클럽 정회원의 10% 이상이 초과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은퇴한 회원은 직업분류의 총 회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을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회원이 직업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클럽은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을 새 직업분류에 속하는 회원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나아가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5 페이지)

제 7 조 직업분류

제 1 항 일반 조항

(가) 주된 활동. 본 클럽의 정회원은 회원의 사업 및 전문 직업, 혹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각 정회원의 직업분류는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활동이라야 하며, 또는 본인 자신의 주된 직업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및 전문 직업 활동, 혹은 회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30

직업분류가 총원된 경우에도 재단동창을 정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할 것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71-172 페이지)

제 5 조 회원

제 2 항 - 클럽의 구성

(나) 클럽은 회원들이 특정 사업이나 전문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클럽이 동일한 직업분류에 이미 5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업분류에 더 이상의 정회원을 선출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 이상이며 어느 특정한 직업분류에 클럽 정회원의 10% 이상이 초과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은퇴한 회원은 직업분류의 총 회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 혹은 RI 이사회가 규정한 로타리재단 동창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을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회원이 직업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클럽은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을 새 직업분류에 속하는 회원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나아가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5 페이지)

제 7 조 직업분류

제 2 항 제한. 동일한 직업분류에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그 직업분류에 정회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분류의 회원수가 클럽 정회원 총수의 10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클럽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직업분류에 해당하는 정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위에 명시된 회원의 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은퇴자는 직업분류를 보유한 회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 혹은 RI 이사회가 규정한 로타리재단 동창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클럽의 정회원 선출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만일 회원의 직업분류가 변경되면, 클럽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새로운 직업분류 하에 해당 회원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31*

회원 자격 종결과 관련된 직업분류 조항의 수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9페이지)

제 11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5 항 자격 종결 — 기타 원인

(다) 직업분류 총원. 이사회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킨 경우, 본 클럽은 이의 제기 청문회 시한이 종료되어 본 클럽 또는 중재자의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직업분류에 새 회원을 총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사회가 종결 조치를 반복하더라도 직업분류에 따른 인원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34

결석으로 인한 회원 자격 종결 규정을 개정할 것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8 페이지)

제 11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4 항 자격 종결 — 결석

(가) 출석을.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2) 로타리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30 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RI 이사회가 규정한 총재보좌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35

회원자격 종결 절차 중에 클럽이 회원자격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것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7-239 페이지)

제 11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10 항 회원 자격의 임시 정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자격을 임시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회원이 클럽 정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혹은 회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행동이나 클럽의 이해에 불이익을 끼쳤다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 (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원 자격 종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다) 심의중인 사안의 결과가 적절히 드러나고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에 관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라) 회원자격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임시 정지시켜 주회나 기타 클럽 활동, 맡고 있는 클럽 직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클럽의 이해에 가장 최상인 경우(해당 회원은 출석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자격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40*

RI 이사회 결정 사항을 출판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81 페이지)

제 5 조 이사회

5.020. 이사회 결정 사항의 출판

이사회의 모든 회의록과 결정 사항은 회합일이나 결정 이후 60 일 이내 로타리 웹 사이트에 올려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회의록에 속한 모든 부록도 로타리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단, 법적으로 기밀이나 독점권에 속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42

RI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개정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5 조 (절차요람 180-181 페이지)

제 5 조 이사회

5.020.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이사회 의결에 대한 클럽들의 이의 제기는 정기 또는 특별 국제대회에서만 이사회 규정에 의해 가장 최근의 규정심의회에 참석했던 지구 대의원들의 우편투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의 제기는 한 클럽이 최소한 24 개 이상의 타 클럽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하는 클럽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의를 제기한 클럽이 소속한 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의 제기 및 이에 대한 동의는 이사회 결정이 있는 후 64 개월 이내에 그리고 국제대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90 일 전에 접수되어야 한다하며, 사무총장은 그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편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는 해당 클럽의 주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고 회장과 총무가 확인한 결의안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의 제기에 대해 국제대회지구 대의원들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지속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가 차기 규정심의회가 열리기 전 3 개월 이내에 접수된다면 이는 차기 규정심의회에서 다루어진다.

제10조 (절차요람 199 페이지)

제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거 - 일반 규정

10.050.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및 유세 지원

10.050.3. 이사회 심의

이사회는 그러한 이의 제기를 신중히 심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의 제기를 기각하거나, 선출직 후보자를 실격시키거나 또는/동시에 향후 RI 선출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실격시키거나, 기타 이사회가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을 실격시키려면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실격 조치에 대한 해당 RI 직책과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본 세칙 제 5.020.항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그러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이사회가 접수 일자의 연기를 허락하지 않는 한, 국제대회가 개최되기 최소한 5 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43

로타리안들의 분쟁 해결 규정을 마련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31 페이지)

제 24 조 중재와 화해

24.010. 분쟁

24.020. 화해 혹은 중재 일정

24.030. 화해

24.040. 중재

24.050. 중재인 혹은 판정인의 결정

24.010. 분쟁

RI 이사회 결정을 제외하고 로타리클럽의 전직 혹은 현재 회원과 지구, 국제로타리, RI 임원 간의 분쟁 혹은 기타 우호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모든 분쟁은 한 쪽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경우 화해 절차에 의해 타결되며, 화해가 거부될 경우 중재에 의해 타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화해나 중재 요청은 분쟁이 발생한 지 60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4.020. 화해 혹은 중재 일정

화해 혹은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분쟁 요청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접수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화해 혹은 중재를 위한 날짜를 결정한다.

24.030. 화해

화해 절차는 RI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이 사무총장이나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람에게 분쟁 당사자들이 소속된 클럽이 아닌 다른 로타리클럽 소속으로 이 분야의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지닌 화해자의 임명을 요청한다.

24.030.1. 화해 결과

화해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결정이나 결과는 문서화하여 양쪽 당사자와 화해자가 보관하고, 이사회와 사무총장에게도 각각 그 사본 1 부를 제출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화해 결과를 담은 요약서도 양측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화해 입장을 크게 후퇴할 경우, 사무총장을 통하여 화해를 또다시 요청할 수 있다.

24.030.2. 성공하지 못한 화해

화해가 요청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본 조 24.040 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24.040. 중재

중재 요청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중재인(들)을 선임하여야 하며 중재인(들)은 판정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들의 소속이 아닌 다른 로타리클럽의 회원만이 중재인, 혹은 판정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24.050.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중재가 요청된 경우,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나, 혹은 중재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4.060. 화해 혹은 중재 비용

화해 혹은 중재에 의한 분쟁 타결의 비용은 화해자나 판정인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분쟁 당사자 양쪽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44

예비 로타리안들에 대한 통계를 전략 계획안에 포함시킬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22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100. 전략 수립 위원회

이사회는 위원 6 명으로 구성되는 전략 수립 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6 년 단임으로 하되, 격년으로 2 명씩 임명한다. 전임 회장이나 현 이사, 혹은 현 관리위원은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장기 전략 수립, RI 프로그램 및 활동, 재정 관리 등에 경험이 있는 로타리안들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날짜와 장소에서 1 년에 1 회 회합을 가지며,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장이나 이사회가 정하여 통보한 날짜와 장소에서 추가로 회합을 갖는다. 전략 수립 위원회는 이사회가 검토할 전략을 개발하거나 건의, 개정하고; 최소한 3 년에 한 번씩 로타리안들과 클럽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전략과 관련된 제안이나 자문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차기회장과 더불어 장래의 프로그램이 수립된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며, 기타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조만간 로타리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를 포함하여 각 대륙의 예비 로타리안들의 숫자 변화를 염두에 두어 이러한 변화가 각 존에 끼칠 영향을 예상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07-348

국제로타리 여행 방침을 변경할 것

현재 RI 회장, 차기 RI 회장,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장과 그 배우자들은 로타리 업무로 인한 여행시 항공기 1 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현직 및 전직 RI 이사, 관리위원들과 그 배우자들은 로타리 업무로 인한 여행시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현직 RI 회장, 차기 RI 회장,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장과 그 배우자들은 1 등석을 이용하고 임기 후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국제로타리 여행방침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RI 이사, 로타리재단 관리위원과 그 배우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고, 임기 후에는 일반석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50*

모든 RI 회장 후보자들에게 인터뷰 기회를 부여할 것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203 페이지)

제 11 조 회장 지명 및 선거

11.050. 선거위원회에 의한 지명

11.050.2.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10 월 1 일 이전에 이사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후보들에게 인터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07-357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후속 조치를 알릴 것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절차요람 174 페이지)

제 10 조 규정심의회

제 6 항 - 채택된 결의안. 이사회는 규정심의회 종료 후 1년 이내에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취한 후속 조치들을 모든 지구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끝)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입법안 가운데 2건 이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본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입법안마다 각각 1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본 양식을 RI에 제출하실 경우, 2007년 8월 27일까지 에반스톤 세계본부에 접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클럽은 최소한 1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25명이 넘는 클럽들은 매 추가 회원 25명마다 1표씩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1표의 추가 투표권을 갖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회원수에 따른 투표권 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클럽 회원수</u>	<u>투표 수</u>
1-37	1
38-62	2
63-87	3
88-112	4

클럽회장으로서 아래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 본 클럽은 정기 주회에서, 2007년도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다음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7-_____

2. 2007년 1월 1일 현재 클럽 회원(명예회원 제외) 수에 따라 본 클럽의 투표*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기 표 참조):



날짜: _____

클럽 회장: _____
서명

_____ (성명(정자로 기입))

_____ 로타리클럽 지구번호 _____

반송처:
General Secretary
c/o Council Services Section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linois 60201 USA

**본 양식은 2007년 8월 27일까지 에반스톤
세계본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Fax: 847-556-2123